

경인권역 「2020년 지역통일교육센터」 선정 공고문

경인권역 「2020년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 공모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통일부는 내실있는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을 위해 기존 17개 광역 시·도 기반에서 권역 기반의 7개 지역통일교육센터 체계로 사업을 개편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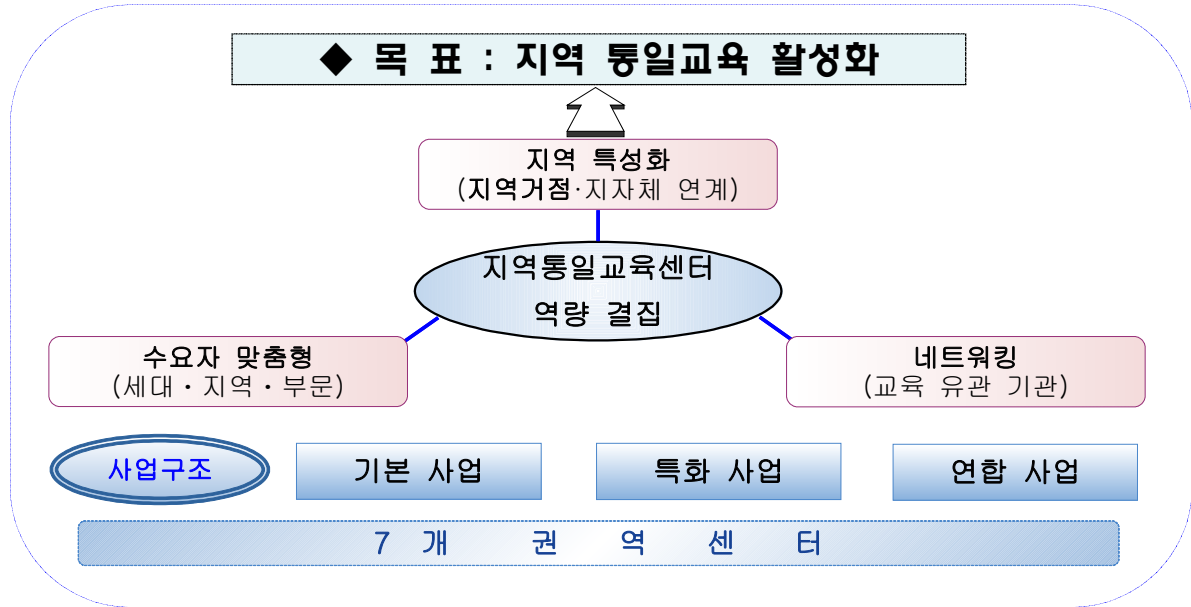
자세한 사항은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21일

통일부장관

1 사업 개편 취지

◆ 지역통일교육센터가 지역 통일교육 허브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 개선



- 지역사회 통일교육의 중요성이 증대함에도 기존 광역 시·도 기반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에 여러가지 어려움 발생
 - 소규모 예산으로 17개 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사업비가 부족하여 다양한 사업 추진이 어렵고, 지역사회 역량 있는 기관들의 참여도 제한적
- 지역통일교육센터가 지역 통일교육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역 단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운영 체계 개편
 - 권역 센터(7개) 체계로 개편함에 따라 센터당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다양하고, 내실 있게 사업 추진 가능
 - 사업 주체를 기존의 대학 중심에서 대학·NGO 등이 함께 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다양화하고, 전담인력 확충 등 지역 통일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 권역센터를 중심으로 평화·통일 지역거점,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 모델 개발 및 사업 시행
- 현재 예산 제약 하에서는 7개 권역센터 운영이 적절
 - 앞으로 센터 운영과정에서 권역센터 추가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권역센터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추진

2 사업 목적 및 관련 규정

□ 사업 목적

- 통일교육 의지와 사업 역량을 갖춘 지역의 기관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공모·지정함으로써 지역기반 통일교육 활성화
 - 지역사회 통일교육 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 및 지역주민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제고

□ 관련 규정

- 센터 지정 :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등)
- 센터 지원 :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정부의 임무)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경비의 지원 등)

3 공모 개요

- 지원 대상 : 경인권역 소재 민간단체·대학 등 통일교육 역량이 있는 기관
 - * 권역 구분 : △서울 △경인(경기·인천) △영남(대구·울산·경북·경남·부산) △호남(광주·전북·전남) △충청(세종·대전·충북·충남) △강원 △제주
 - ※ 통일교육 선도대학과 중복 수행 불가
- 지원 규모 : 총 1개 기관 선정, 권역별 규모와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지원(센터별 경상비 포함 총 보조금 평균 2억원)
 - 센터당 상근직(사무처장 1명·간사 2명, 총 3명)에 대한 최소한의 인건비 지원, 필요시 상한 내에서 임대료 지원도 고려
 -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경상비와 사업비는 센터 자체 조달 필수

○ 지정 기간 : 지정일로부터 '22.2.28.까지(약 22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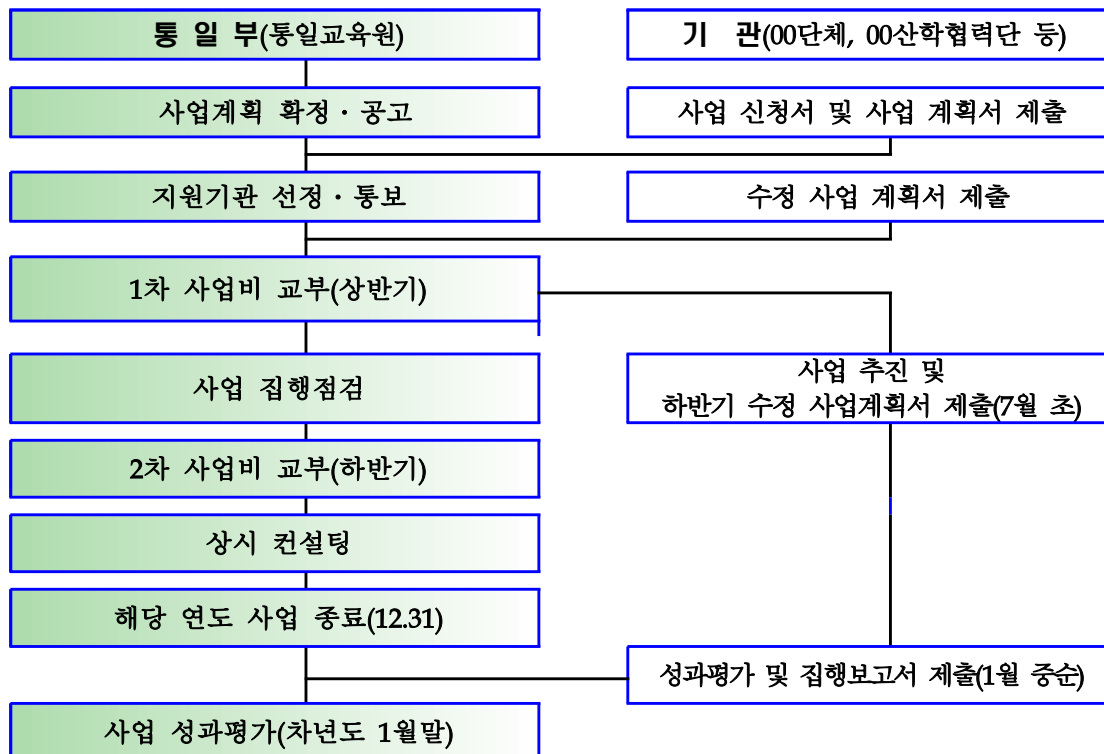
- 통상 통일교육위원 임기와 연동하여 2년이었으나, 금년에는 공모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 지정기간을 축소
- 매년 성과평가 후, 실적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 사업비 삭감 등 불이익 처분
 - * 지정 취소 등으로 지원 중단 기관 발생시, 해당 기관의 지원 수준을 축소
- 경인권역 평화·통일 지역거점인 「인천통일+센터」를 중심으로 사업 연계·조정 필요

○ 지정 기관(지역센터)의 역할

- (통일교육 실시) 지역주민 대상 사회통일교육 실시
- (교육위원 지원) 권역 및 광역 시·도 운영 위원회·지역 위원회 설치·지원
- (거버넌스 구축) 지역거점, 지자체, 통일관련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
- (센터 행정업무) 센터 및 통일교육원·중앙센터 행정업무 협조

○ 지원 시기 : 매년 성과평가 및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 * '20년은 5월(상반기), 8월(하반기) 교부 예정

< 사업 추진 체계도 >



4 센터 조직 및 사업 내용(2020년부터 신규 적용)

- 센터 조직은 센터장(통일교육위원 지역협의회장이 겸임), 사무처장, 간사로 구성
 -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 사무처장과 간사는 상근직, 전문강사 채용 지역은 센터 지정 후 새롭게 신청 받을 예정('20.5월 이후)
- 센터의 활동범위는 권역 내 모든 광역 시·도를 포함하고, 센터 권역 내 모든 통일교육위원 지역협의회를 지원
 - 통일교육위원과의 연계 사업 추진계획 제출
- 권역센터는 해당 권역 내 통일교육위원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40명 내외) 및 지역위원회(10명 내외)를 설치
 - (운영위) △연간 운영계획 심의 △지역간 사업 조정 △센터 운영 평가
 - (지역위) △지역 사업 발굴 △지역별 사업 심사·평가
 - * 구성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 선정 이후 「센터운영 교육」시 설명
 - (사업내용) △기본사업 △특화사업 △연합사업 으로 구분하여 추진

< 2020년 지역통일교육센터 추진사업(참고) >

구 분	세부 사업명	사 업 내 용
기본 사업	통일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지자체·지역언론사 등과 협업을 통한 공동기획 • 지역특성에 맞는 주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 지역주민의 통일문제 관심 유발, 올바른 통일관 정립
	통일 체험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통일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방문 등 체험형 교육
	통일교육위원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담론을 창출, 지역통일 교육선도 및 홍보역할 등 지역센터 위상 제고 • 통일교육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통일교육위원 지역협의회 워크숍 개최 ※ 분기별 개최(연간 최소 3회 이상 실시)
	운영위 및 지역위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별 운영위원회(권역별 40명 내외, 협의회별 10명 내외) 운영 • 권역 내 광역시·도 단위 지역협의회 지역 운영위원회(협의회별 10명내외) 등 개최·지원
특화 사업	권역별 특성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 특성을 반영한 통일교육 모델 개발 •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실시 • 지자체, 언론사 등과 공동으로 주관, 신문·방송 기획기사 보도 홍보 병행
연합 사업	권역별 연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 협의체 △권역단위 경연·행사·축제 등 지역간 연계 사업 • 지자체·교육기관·민간단체와 MOU 체결 등을 통해 맞춤형 통일교육 추진을 권역을 중심으로 협력 네트워크 구축·강화

- ※ 특화 사업은 권역별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구성 가능하며, 연합 사업은 권역 내 광역시·도간 협력하여 규모있게 추진 가능
- ※ 평화통일 지역거점이 구축된 권역은 △교육 △체험 △특수자료 활용 등을 상호 연계

5 선정 방법 및 기준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에서 대면심사 실시, 최종 선정

- 기관별 사업계획 보고서에 대한 △사업설명(15분), △질의·응답(20분) 순으로 평가 실시(충분한 심사를 위해 필요시 연장)

○ 선정기준 및 배점

심사 항목	심사 내용	배점	평가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 사업 목적의 충실성· 타당성(5) · 사업 추진 전략의 타당성 및 신뢰성(5) · 사업 범위 대비 예산 계획의 적절성(5) - 예산편성 및 산출 내역의 타당성	15	
사업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충실성	- 사업 프로그램 구성의 타당성 - 수요자의 요구와 눈높이 충족 여부 - 지역별, 교육 대상별 특성 반영 여부 - 프로그램 운영 방법의 적절성	30	
기관의 사업수행 역량	· 통일교육 또는 유사사업 경험(5) · 조직 및 행정역량(10) - 프로그램 기획 전문가, 행정지원 인력 보유, (국고보조금 지원 외 추가 투입 인력 보유 여부도 판단 대상) 등 ·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사무실 등) 보유 여부(5)	20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역량	·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NGO 등과의 지역사회 내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여부(10) · 지역사회 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사업 실시 경험(10)	20	
지원기관의 통일교육 열의	· 해당 기관장을 통일교육위원 지역협의회장으로 위촉 가능 여부(5) · 국가보조금 이외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을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역량(10)	15	
권소사업 구성	· 권역 내 지역 통일교육 확산을 유도 할 수 있는 기관 간 협력체 구성 여부(10)	10	가산점
총 점		110	

○ 권역센터 신청 기관이 권역 내 타 지역 기관과 권소사업 구성할 경우 항목 외 가산점 부여(10)

- 권역센터가 미 지정된 광역 시·도의 지역주민과 통일교육위원회에게 충분한 통일교육 기회를 제공

* 단, 권역 지역센터 신청기관(주 사업자)과 협력기관(보조 사업자)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구분하여 응모

- 경인권역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인천 통일+센터」에 입주 권고
 - 경기·인천 지역 기관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응모할 것과 센터 지정 기관 또는 협력기관 중 1개 기관은 「인천 통일+센터(송도)」 입주
 - * 「인천 통일+센터」 : '18.9월 개소, 인천지역 하나센터·통일교육센터 등 지역통일교육 인프라와 기능을 연계·통합하여 지역 통일운동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
- 심사일정(예정) 및 심사방법
 - 공모접수 완료 후 5.13.(수) 신청 기관에 해당 심사일자 개별통보, '20.5.18.(월) 혹은 5.19.(화) 예정 * 심사일정은 공고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사일정	심사방법	결과발표
'20.5.18.(월) 혹은 '20.5.19.(화)	대면심사	'20.5.22.(금) 18:00 ~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심사 결과, 적격기관이 없는 권역의 경우 추가 공모 실시

6 제출 서류 및 접수 방법

- 사업계획 보고서는 붙임의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과 제출 요령을 참고하여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목적 등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자율적으로 작성
 - 제출 서류
 - 제출공문 및 사업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사업계획 보고서 10부(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시설장비 보유현황, 사업 계획서 등 포함), USB 파일 1개(사업계획 보고서 한글파일) ※ 사업설명은 PPT로 준비
 - 제출 기한 및 접수 방법
 - 제출 기한 : '20.5.11.(월) 도착 분에 한해 인정(우편소인은 '20.5.8.까지 인정)
 - 접수 방법 : 우편제출, 통일교육원 교육협력부 사회통일교육과
 - 접수처 : (우편번호 0101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 담당자 : 통일부 통일교육원 박종훈 사무관(전화 : 02-901-7060)
- ※ 신청서에 응모권역 명기(기관 소재지와 행정구역 일치)

붙임 : 「사업계획 보고서」 작성 예시 및 제출서류 양식
 사업계획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요령 1부 /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신청서 1부
 전문인력 보유현황 1부 / 시설장비 보유현황 1부
 사업 계획서(상세) 1부 /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1부

